



제274회 임시회
2008. 9. 18(목)

검토보고서

- 과제명 : 충북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
- 신청인 : 최미애 의원(교육사회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8.9.18(목)

-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 길 상입니다.
- 「충북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마련」 의원연구활동계획서 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 근거와 경위를 보고드리면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와 충청북도 의회의원 연구활동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 2008년 9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이 단독으로 총무담당관실에 신청하였고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이송되어 오늘 금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 우리도내에서 운영하는 142¹⁾개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아동보호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 시군의 재정지원이 미미하여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정부와 시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정부분을 광역지자체로는 우리도가 전국유일의 조례를 제정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최미애의원 연구활동계획서 자료(2008. 6. 30)

□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가능여부입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책임규정이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9조²⁾에 주민 및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자치사무로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남 아산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08.9.5) 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우리도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현황입니다

- 금년 8월말 현재 국·도·시·군비를 보조받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20개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 등 총 74억 2,700만원이며, 정책적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전세자금, 주방시설 환경개선비로 7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제정후 지원가능 여부입니다

- 비용보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조비율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따라서 동 연구과제는 해당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사업추진상 부족한 예산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 조례제정³⁾ : 아산시('08.9.5), 기 훈령제정 : 군산시('07.12.17), 경산시('07.9.4)
 - 집행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 제정

다음은 연구의 타당성입니다.

-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1인가족 및 맞벌이부부·이혼율⁴⁾ 증가로 인해 아동의 보호가 취약해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시책에 부합하는 연구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 이에 최미애 의원님이 신청한 「충북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 심의건은 정책적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바, 그 취지와 목적이 연구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무를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하므로 조례제정 이후 운영상의 실제적 이익성, 아동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도에서 정책화하여 지원되는 보조금 7억 8천만원에 대한 제도권내로의 흡수와 동법 제6조의 아동위원 위촉에 대한 법의 저촉성으로 지원의 심사절차와 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해소하는 것을 권고해 연구활동비를 지원함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 이상으로 「충북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마련」 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3)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1.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9.5), 2.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2007.12.17), 3.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2007.9.4)

4) 충청북도 이혼율 : 1990년 864명, 2000년 3,348명, 2007년 3,558명('90년대비 311% 증) / 2008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